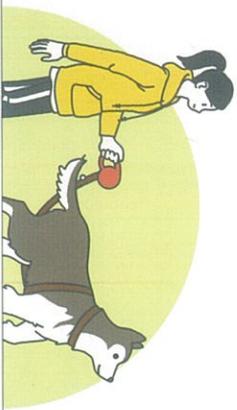


# 반려견과 외출할 때 준비해 주세요



## 1. 인식표 부착하기

외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주세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 동물등록을 했어도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해요



## 2.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워주세요  
※ 맹견은 목줄 및 입마개 필수



## 3. 배설물 수거하기

배변봉투 등을 지참하여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 주세요

※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놓거나 있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만들기

##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경기도에서는 매년 2만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인을 찾지 못하는 유기동물은 인도적 처리(인락사)가 불가피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함으로써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살니다. 결혼, 임신, 이사 등으로 가정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결심하였습니까?
- ✔ 모든 가족과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짚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 유기동물 입양 문의

### • 경기도 도우미리나눔센터

주소 :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15  
카페 : [cafe.naver.com/helpdog1](http://cafe.naver.com/helpdog1)  
전화 : 031-8008-6721~7

### •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센터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0, 2층(인계동)  
카페 : [cafe.naver.com/ggpstadoptioncenter](http://cafe.naver.com/ggpstadoptioncenter)  
전화 : 031-546-8488

### • 경기도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 및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http://www.animal.go.kr))

#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경기도 동물보호과



## 맹견 소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1. 맹견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볼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테퍼드셔 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2.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오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 주세요
- 맹견은 어린아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맹견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의무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맹견 소유자의 교육

-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 교육이수 방법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mns.sps.or.kr)을 통해 이수 가능
- \* 위반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 동물등록은 '내 아이'와의 약속입니다.

잠시 길이 잊갈려도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오래 지켜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이어주세요

### 1. 등록 대상

- 주택, 준주 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 2. 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교체 삽입(개, 고양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개)

### 3. 등록 비용

- 등록수수료(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 장치비용
- \* 등록장치비용은 대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 경기도에서는 고양이와 2개월령 이상의 개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4. 등록 방법

- 반려동물과 함께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5. 변경사항 신고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 동물 사망,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음,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30일 이내)
- 동물 분실(10일 이내)
- 변경 방법 :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동물 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

###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ICD, 무선전자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 반려견 동반인출 시 준수사항 위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동물 미등록	20	40	60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10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20	30	50
배설물 미수거	5	7	10

### 동물학대 행위시(형사처벌)

무엇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품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일선 구매하는 행위)

###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